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□ 제조자·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조례 감면(영§71)</p> <p>① (담보금액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자 : 반출담배에 대한 산출세액 합계 - 既납부세액 - 수입판매업자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입신고담배에 대한 산출세액 합계 - 既납부세액 <p>② (수입판매업자 통관절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에게 납세담보 제공 → ②관할 시장·군수는 납세담보확인서 발행 → ③세관장에게 제출 → ④세관장은 담보물량 범위에서 통관 허용 <p>③ (감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정 요건* 충족되는 경우 조례**에 따라 담보금액 감면 <p>* 담배 반출일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 체납 및 고의 회피사실 無</p> <p>** (서울시 조례) 납세담보 50% 감면</p>	<p>□ 납세담보금액 감면 규정 법령 상향 및 감면을 면제로 규정(영§71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면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정 요건* 충족시 납세담보금액을 전액 면제하도록 시행령 개정 <p>* 담배 반출일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 체납 및 고의 회피사실 無</p>

□ 개정 내용

- 자치단체별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례로 위임하였으나, 조례 감면 지자체는 서울시 1곳 뿐으로서,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짐

* 현행 수입판매업자 461개 업체 중 458개는 담보제공 없이 담배소비세를 미리 납부하고 반출(법 §64④), 나머지 3개 업체(1개는 50% 조례 감면)는 납세담보 제공 中